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29
----------	----------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송순효, 윤유선, 김동협, 신낙형

강선영, 이충현, 박성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환경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학교환경교육 지원의 범위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자환경

-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사. 환경교육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 제26조

나. 협조부서: 녹색환경과

다. 입법예고: 2020. 11. 6. ~ 2020. 11. 1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신설한다.

붙임

관계법령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

제10조(환경보전계획) ①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서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5.18)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6.5.18)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6.5.18)

④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

제2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8)

② 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